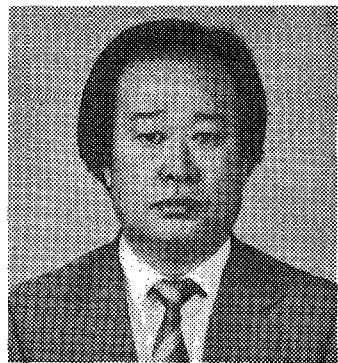


「環境權」 제정에 부치는 단상

- 준법하는 자유인 -



柳志允 / 원광대학교 교수 · 本協会 명예회원

새 헌법 제 35 조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그 1 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2 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3 항에서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 보호정책에서 차지하는 쾌적한 주거생활권의 높은 비중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문화사의 흐름속에서 제일 먼저 변화의 기미를 노출하는 분야는 예술이라고 한다. 인간은 어떤 새로운 사상이 정립되기 전에 먼저 정서적인 변화를 느낀다. 그것은 시류의 변화를 몸으로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소위 감을 잡는 것이다. 인간은 그들의 정서적 표현을 몸으로, 소리로, 말로,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예술이라고 한다. 시류 변화에 민감하고 또 그 변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예술 분야는 이러한 그의 스피디한 성격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험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다음, 어떤 새로운 예술풍조가 세간에 넘쳐 흐르고 일반화 되면, 그것은 새로운 사상



동양의학의 원리는『생과 사, 또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연관과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으로 굳혀지며 새로운 이념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념이 일반화된 상식이 될 때, 그리하여 그것을 발전시키고 보전할 필요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법률로써 제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성급한 급진주의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때늦은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법이란 강제성을 띠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하는 바가 국민의 일반적 상식이나 혐원과 동떨어진 것이면 크게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금번 환경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크게 시의를 얻은 처사라고 하겠다. 하늘이 주신 자연은 깨끗이 보전해야 할 뿐 아니라, 훼손된 부분은 적극 복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도 산업의 고도 성장과 인구 밀집에 따르는 환경 오염이 극심하여 적극적인 법의 개입이 요청된다고들 아우성치는 소리가 도처에서 요란하게 들려온다. 민주화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사례는 엄청난 것으로 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걸은 연기를 내어뿜으며 버젓이 달리고 있는 버스나 트럭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공장폐수를 아무데나 버려 놓기 되었다는 신문 기사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합성세제로 인한 상수도·수자원 오염 문제는 언제 완전 해결을 보게 될지는 궁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니 이에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어디까지나 법률이다. 법

은 국민감정의 최종적 산물이요 국민 행위의 최후의 선도 수단이요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환경권의 법률 제정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반면 한심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환경권 제정의 의미가 환경 오염이나 자연 훼손이 강제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구제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을 낳아 준 어머니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치적으로도 그렇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항상 겹혀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환경의 오염이나 자연의 훼손은 존속상해를 저지르는 범법 행위와도 같다. 패륜아의 눈에는 친족이나 존속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인륜에 관계되는 선을 넘을 때는 양심의 고통이 뭔다. 이런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없는 자연과 우리를 묵묵히 포용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과 존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양의학의 원리는 「생과 사, 또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연관과 제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하여 「陰陽論」 또는 「五運六氣論」 등을 냉아 巨視的으로는 우주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여 고도로 정밀한 曆學을 만들고 微視的으로는 인체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생리나 병리를 설명하기도 했던 것이다.

어버이가 나를 낳아 준 것을 알진댄 자연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환경보전」을 할 수 있다



우리 인류의 어버이임도 알아야 한다. 인류는 곧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존엄스럽게 본다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법이 우리의 행위에 제제를 가하더라도 그것이 부자유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칸트나 공자가 말한대로, 인간이 욕망하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마음 가짐을 우리는 자연에로까

지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선한 행동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고전의 가르침(君子必慎其獨也)을 되새겨 보자. 그리하여 준법하는 자유인이 되자. *

의식개혁 9대 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전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